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직인생략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금산빌딩 907호) /전화: 02-761-4203 /팩스*782-6659
담당부서 : 대외협력팀 담당부서장 : 송자은 부장 담당자 : 고정은 과장 e-mail: jenko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12-425호

시행일자: 2020.12.3.

수신자: 화장품 제조업자 및
책임판매업자 대표이사

참 조:

제 목: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안내의 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-7200(2020.12.1.)호 관련입니다.

3.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으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.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